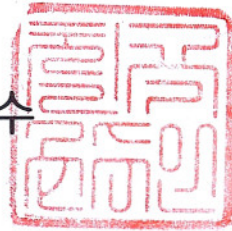
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 공고

『산림보호법』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04. // .

칠 곡 군 수



1. 공고기간 : 2013. 04. 11. ~ 2013. 05. 13.
2. 지정사유 :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3. 의견 제출기간 : 2013. 05. 13.까지
4. 지정 예정 연월일 : 2013. 05. 14.
5.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과 같음
6. 지정대상지 지형도 : 붙임과 같음
7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: 붙임과 같음
8. 의견제출 :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칠곡군 농림정책과로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농림정책과 산림보호담당(☎ 054-979-63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·주소 1부
2. 지정대상지 도면 1부
3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
4. 이의신청서 1부. 끝.